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정규교원, 기간제교원,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정규교원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법적 근거 미비로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 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 마련(안 제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및 제19조의5”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 ----- ----- ----- -----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1. ----- ----- ----- ----- ----- ----- ----- ----- ----- -----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및 제19조의5-----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연 락 처	(044) 203 - 6508